중소기업하기 좋은 환경!, 「가업승계 세무컨설팅」 최초 실시

– 국세청, 2022. 6

□ (실시배경) 최근 창업세대의 고령화로 가업승계가 중요해졌으나, 관련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장기간의 계획과 치밀한 준비가 필요하여 활용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.

○ 이에 국세청(청장 김창기)은, 가업상속공제 등의 요건 충족여부를 판단해주는 「가업승계 세무컨설팅」을 최초로 실시하여 중소기업인의 가업승계를 적극 지원하고자 합니다.

□ (컨설팅 내용) 신청기업을 대상으로 가업승계 사전·사후요건을 진단하여,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고, 가업승계와 관련한 서면질의는 최우선하여 처리합니다.

○ 신청기업이 개별 사안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면 구체적 판단사항에 대하여 4주 이내 의견을 제공하는 등 상시 자문도 실시하고,

○ 컨설팅 중 구체적인 해석이 없어 불편을 주고 있는 경우가 확인되면 신속하게 세법 해석이 제공되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.

□ (신청방법) 컨설팅은 대표이사가 5년 이상 재직하였거나, 가업승계 사후관리가 진행 중인 중소기업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○ '22.7.1.(금) ~ 8.1.(월)까지 홈택스 또는 기업 대표자 주소지 관할 지방국세청에 신청할 수 있으며, 선정결과는 서면심사를 거쳐 '22.8.31.(수)까지 알려드립니다.

1 「가업승계 세무컨설팅」 최초 실시

□ (실시배경) 중소기업은 전체 사업체의 99.9%, 고용시장의 82.7%를 담당하고 있으며, 국가경제의 성장을 견인해 왔습니다.

○ 최근 창업세대 경영자의 고령화로 은퇴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가업승계는 중소기업 경영자의 중요한 관심사로 대두되었으나,

○ 가업상속공제 등 가업승계 지원제도는 10년 이상의 장기간 계획과 사전·사후요건 충족을 위한 치밀한 준비가 필요하여 컨설팅이나 정보제공을 원하는 기업이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

있습니다.

| 가업승계 원활화를 위한 정부추진 우선과제 |

■ 가업승계과정 원활화를 위해 정부에서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과제로는 '일시적 경영안정자금 지원'이 65.7%로 가장 높았으며, 다음으로는 '가업승계 컨설팅 및 정보 제공'(20.5%), '경영자 및 후계자 전문 교육'(7.8%) 등의 순으로 조사됨

* 출처: 2021 중소기업가업실태조사 보고서(중소기업중앙회, '21. 12.)

○ 이에 국세청(청장 김창기)은, '22년 9월부터 가업승계를 계획하고 있거나 진행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「가업승계 세무컨설팅」을 최초로 실시하여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합니다.

□ (개요) 「가업승계 세무컨설팅」이란, 각 지방국세청에 가업승계 세정지원팀을 구성하여 기업별 상황에 맞는 가업승계 관련 컨설팅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.

○ 가업승계를 준비하고 있는 기업에게는 세제혜택을 받기 위한 준비사항을 사전에 안내하고,

○ 이미 가업을 승계한 기업에게는 의무준수를 위해 유의할 점을 안내하는 1:1 맞춤형 세정지원제도입니다.

2 가업승계를 위한 세법상 지원제도

□ 세법상 가업승계 지원제도는 가업상속공제와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가 있으며, 「가업승계 세무컨설팅」을 통해 기업이 가업승계 지원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겠습니다.

1 가업상속공제란?

□ (개요)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운영한 중소기업을 상속인에게 승계한 경우에 최대 500억 원까지 공제를 하여 상속세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.

적용요건 및 혜택		
세제 혜택	피상속인이 경영한 기간에 따라 (10년 이상)200억 원, (20년이상)300억 원, (30년이상)500억 원 공제	
적용 요건	피상속인	• 최소 10년 이상 경영한 기업 • 피상속인 포함 최대주주 지분 50%(상장 30%) 이상을 10년간 보유
	상속인	• 18세 이상이면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가업에 종사 • 상속인은 지분이 감소하지 않아야 하며, 상속개시 당시의 고용인원(총급여)을 유지

2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란?

□ (개요) 경영주가 자녀에게 기업을 사전 승계하기 위해 가업주식을 증여할 경우 100억 원 한도로 10~20%의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, 이후 상속시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·정산하는 제도입니다.

적용요건 및 혜택		
세제 혜택	증여재산에 대해 100억 원을 한도로 5억 원 공제 후, 잔액에 대해 30억 원까지 10%, 100억 원까지 20% 증여세율 적용	
적용 요건	증여자	• 최소 10년 이상 가업을 경영한 60세 이상 부모
	수증인	• 5년 이내 대표이사 취임 • 가업에 종사하지 않거나, 지분이 감소하는 경우 증여세 추징

3 「가업승계 세무컨설팅」 지원 내용

|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제도 흐름 |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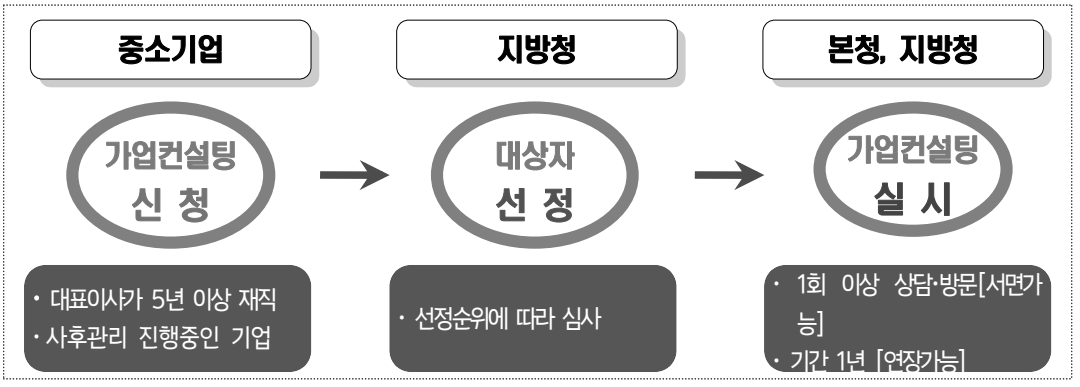

□ (컨설팅 기간) 대상 선정일부터 1년간 가업승계 관련 세무컨설팅을 지원하며, 계속적인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1년 연장 가능합니다.

□ (컨설팅 내용) 정기 컨설팅은 1회 이상 실시하고 기업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수시컨설팅도 가능합니다.

○ (요건 진단) 지방청 대면상담, 기업 현장방문 등을 통해 컨설팅 시점을 기준으로 가업승계 세제혜택을 위한 사전요건과 사후요건을 진단하고,

–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할 사항을 안내하는 등 기업별 상황에 따른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합니다.

* 기업 대표자 주소지와 기업 본점 소재지가 원격지인 경우 등에는 서면 컨설팅도 가능합니다.

※ 컨설팅 시점의 사실관계를 기초로 진단하며, 추후 사실관계가 변경되는 경우 진단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.

○ (상시 자문실시) 컨설팅 대상 기업이 가업상속 공제 가능 여부나 사후관리 위반 추징사유 등을 자문요청하면, 구체적 판단사항에 대하여 4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합니다.

○ (서면질의 우선처리) 가업승계와 관련한 서면질의를 제출하는 경우 최우선 처리하여 불확실성이 조기에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

4 가업승계 관련 법령해석 신속 제공

□ (세법 해석)「가업승계 세무컨설팅」 과정에서 관련법령의 구체적인 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새롭게 세법 해석을 제공하고,

○ 기존 해석 중 경제환경 등 세정여건 변화에 따라 납세자의 입장을 반영하여 변경할 여지가 있는 건은 국세법령해석심의위원회 안건 상정이나, 기획재정부와의 협의 등을 통해 해석 변경을 검토하는 등

○ 가업승계제도의 입법취지와 납세자의 편익을 최대한 고려하여 필요한 법령해석이 신속하게 제공되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.

□ (旣 변경 사례) 실제로 가업승계 지원을 위해 기존 해석을 변경한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.

○ ('22.5.기재부) 종전에는 건강상의 이유를 제외하고 피상속인이 사망일까지 경영을 해야만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하였으나, 이제는 10년 이상 경영하였다면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더라도 공제가 가능하게 되었고,

○ ('22.1.기재부) 피상속인이 이미 주식 50% 이상을 10년 이상 보유한 상태라면, 종전에는 직접 10년 이상 보유한 주식만 공제대상이었으나, 이제는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보유한 지 10년 안된 주식도 포함되며,

○ ('22.5.국세법령해석심의위원회) 과거 가업상속공제 적용이 불분명했던 유한책임회사도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게 되었습니다.

5 「가업승계 세무컨설팅」 신청 방법

□ (신청대상) ①대표이사가 5년 이상 계속 재직하였거나, ②가업승계 이후 사후관리가 진행 중인 중소기업*이 신청할 수 있으며,

* 자산총액 5천억 원 미만, 상증령 별표에 따른 업종 영위, 중소기업기본법상 매출액(1,500억

원 이하), 독립성 기준 (조특령 §2① 1,3호) 충족

○ 신청한 기업 중 성실납세기업이나 고용인원이 많아 고용창출효과가 큰 중소기업을 우선 선정합니다.

|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우선 선정순위 |

○ (1순위) 조사모범 및 납세자의 날 표창된 모범납세기업(최근 5년 이내)
○ (2순위) 「중소기업 세무컨설팅」 대상 기업
○ (3순위) 세금납부를 통해 적립된 세금포인트가 많은 기업
○ (4순위) 직전 사업연도 고용인원이 많은 기업
○ (5순위) 가업상속 및 가업승계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금액이 큰 기업
○ (6순위) 중소기업중앙회, 대한상공회의소 추천 기업

□ (신청기간 및 방법) 가업승계 세무컨설팅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인은 '22. 7. 1.(금) ~ 8. 1.(월)[1]까지 홈택스[2] 또는 기업 대표자 주소지 관할 지방국세청 소득재산세과에 우편, 방문접수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1) 1차 접수기간, 2차 접수는 추후 공지예정
2) 홈택스 신청화면(접근 경로, 컨설팅 신청화면) [참고 2]

□ (제출서류)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신청서*만 제출하면 되고, 서식은 국세청 누리집(www.nts.go.kr)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

*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신청서 [참고 3]

□ (컨설팅 대상 선정) 신청기업에 대해 우선 선정순위에 따라 서면심사를 거쳐 1차 선정결과를 '22. 8. 31.(수)까지 알려드립니다.

6 향후 추진계획

□ 국세청은 최초로 도입되는 「가업승계 세무컨설팅」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, 중소기업, 유관 단체 · 협회에게 제도 내용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,

○ 국세청 누리집(www.nts.go.kr)의 안내 코너에 관련내용을 게시하여 기업인들의 제도 이해를 돕겠습니다.

* 접근경로 : 국세정보 > 국세정책/제도 >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제도

□ 또한, 컨설팅 과정에서 가업승계에 관한 현장의 어려움 및 건의사항을 귀 기울여 개선하고, 법령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관련부처에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.

□ 한편, 국세청에서는 향후 가업승계가 예상되는 '잠재적 가업승계 대상자'에 대해서도 꾸준한 홍보활동을 실시하여

○ 더 많은 유망 중소기업이 가업승계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세정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.

참고1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제도의 주요 내용

□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제도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
〈신청 및 선정〉

○ (신청대상) 대표이사가 5년 이상 계속 재직하였거나, 가업승계 이후 사후관리가 진행 중인 중소기업*

* 자산총액 5천억 원 미만, 상증령 별표에 따른 업종 영위, 중소기업기본법상 매출액(1,500억 원 이하), 독립성 기준 (조특령 §2① 1,3호) 충족

○ (신청기간 및 방법) '22. 7. 1(금)~8. 1.(월), 홈택스*, 우편, 방문 신청

* 접근경로: 홈택스(www.hometax.go.kr) ▸ 신청/제출 ▸ 일반세무서류 신청 ▸ '가업승계' 조회

○ (접수기관) 대표자 주소지 관할 지방국세청 성실지원납세국 소득재산세과

* 제출서류: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신청서

○ (선정심사) 신청기업에 심사결과를 '22. 8. 31.(수)까지 서면으로 통지

〈세무컨설팅 실시〉

○ (기간) 대상 선정일로부터 1년(희망기업의 경우 1년 연장가능)

○ (요건진단) 컨설팅 시점의 사실관계를 기초로 가업승계 세제혜택을 위한 사전 · 사후요건 충족여부를 검토하고 미비한 부분의 보완 사항 등을 안내

○ (상시 자문실시) 컨설팅 대상 기업이 가업상속 공제 가능 여부나 사후관리 위반 추징사유 등을 자문요청하면, 구체적 판단사항에 대하여 4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합니다.

○ (서면질의 우선처리) 가업승계와 관련한 질의가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본청에서 최우선 처리하여 불확실성 조기 해소

참고 2 예상 질문 및 답변

1. 가업승계 세제상 혜택이 중견기업도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컨설팅 대상을 중소기업으로 한정한 이유는?

○ 매출액이 4천억 원 미만인 중견기업도 가업승계 세제상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,
– 제도 시행 첫해인 만큼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하고, 추후 컨설팅 대상 확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.

2.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신청인이 국세청 가업승계 지원팀의 컨설팅 결과에 이견이 있는 경우는?

○ 국세청 가업승계 지원팀의 결과를 수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의사에 따라 세무처리 및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.
– 다만, 과세처분이 이루어지는 경우 세법에서 정하는 불복과정을 거쳐 적법여부를 다툴 수 있습니다.

3. 사전컨설팅 내용대로 신고를 하면 세무조사를 면제받게 되는지?

○ 상속세 및 증여세는 정부 결정세목으로 결정하기 위한 과정이 필수 이므로, 사전컨설팅 여부와 세무조사 실시 여부는 무관합니다.
– 다만, 컨설팅을 통하여 가업승계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 사전에 준비해야 될 사항을 파악하고, 이미 가업승계를 받은 경우에는 추후 발생 가능한 위험요소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.

4. 가업승계 지원제도를 받을 수 있는 업종에 제한이 있는지?

○ 가업승계 지원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는 업종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별표에 규정하고 있고,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
<가업 해당 업종> 제조업, 건설업, 도매 및 소매업, 음식점업, 출판업, 방송업, 전기통신업, 연구개발업, 광고업,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,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, 경비 및 경호서비스업 등
<가업 제외 업종> 농·임·축산·어업, 주점업, 주차장운영업, 택배, 금융·보험업, 부동산업, 법무·회계서비스업, 입시학원, 스키장, 노래방, 게임장, 무도장, 이·미용업, 욕탕, 세탁, 예식장 등

5. 가업상속공제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제도의 차이는?

○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는 생전에 가업(법인)의 지분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낮은 세율로 증여세를 납부하는 것이고,

– 가업상속공제는 사후에 운영하는 가업을 자녀에게 상속하는 경우 가업에 해당하는 재산을 상속재산에서 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.

6. 가업승계의 사전요건은 무엇을 말하는지?

○ 가업승계를 받기 위한 사전요건은 아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.

구 분	가업상속공제	가업승계 증여특례
가업요건	10년 이상 경영한 중소·중견기업 (개인사업 포함)	10년 이상 경영한 중소·중견기업 (개인사업 제외)
피상속인 (증여인)	지분 50%이상 보유 (특수관계인 포함)	지분 50%이상 보유한 60세 이상 부모 (특수관계인 포함)
상속인 (수증인)	18세 이상인 거주자로 상속개시일 전 2년 이상 가업종사	18세 이상인 거주자로 신고기한까지 가업종사

7. 가업승계의 사후요건은 무엇을 말하는지?

○ 가업승계의 사후요건은 아래와 같으며, 사후관리기간(7년) 동안 충족해야 합니다.

구 분	가업상속공제	가업승계 증여특례
가업재산처분	가업용 자산을 20%이상 처분	-
가업 미종사	1) 2년 내 대표이사 미취임 2) 가업의 주된 업종 변경 3) 가업을 1년 이상 휴·폐업	1) 5년 내 대표이사 미취임 2) 가업의 주된 업종 변경 3) 가업을 1년 이상 휴·폐업
지분 감소	상속인의 지분이 감소되는 경우	수증인의 지분이 감소되는 경우
고용 미유지	근로자 수 및 급여 유지 미달	-

○ 가업승계를 받은 이후 7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세액에 이자상당액*을 더해 납부하여야 합니다.

* (상속) 연 1.2%, (증여) 일 2.2/10,000

8. 가업상속공제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제도 중 어느 것이 더 절세효과가 큰지?

○ 가업승계 세무컨설팅은 신청인이 컨설팅 시점에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요건충족 및 사후관리 위반여부를 확인하고,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며,

–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지 등에 대한 최종 결정은 납세자가 선택하는 것입니다.

9.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신청시 어떤 혜택이 있는지?

○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대상인 경우 가업승계와 관련하여 서면질의신청 시 국세청에서 최우선 처리하여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해 드립니다.

– 또한, 컨설팅 내용대로 조건 유지하는 경우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하여 가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.

10. 가업승계 지원팀에게 모든 세무 문제를 공개해야 하는지?

○ 가업승계 요건의 적정성 및 쟁점내용에 대해 명확하게 사실관계를 판단할 수 있는 정도의 정보만 공개하면 됩니다.

– 다만, 컨설팅 결과는 컨설팅 시점에 제출된 사실관계를 전제로 판단하기 때문에 추후 사실관계가 변경되거나 새로운 사실이 발생하는 경우 검토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

붙임 1 -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예상 사례

사전 요건	개인 사업을 영위하다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*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등 가업의 영속성이 유지되는 경우 개인사업자로서 가업을 영위한 기간 포함

□ 사실관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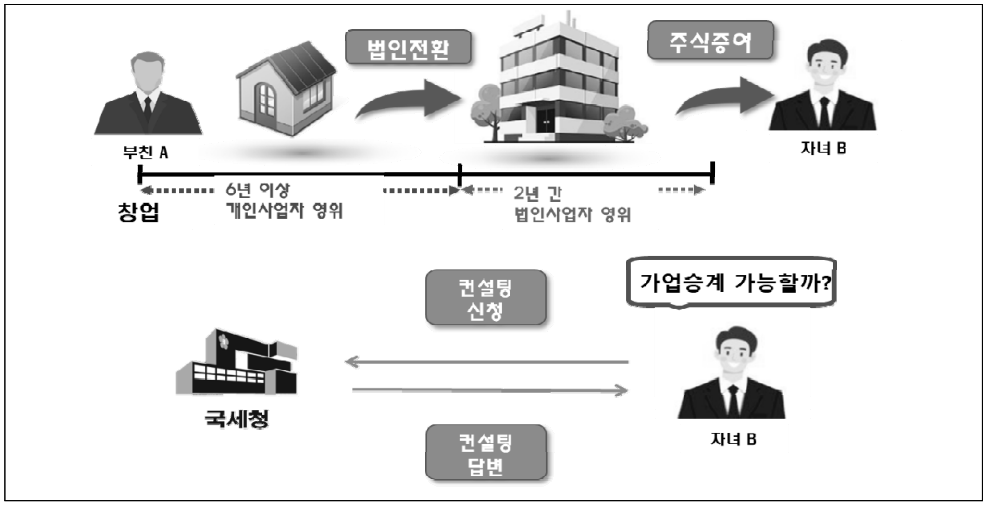

□ 컨설팅 신청

○ 사주 A(65세)는 6년 이상 운영하던 개인사업체(자동차 부품 제조업)를 '20.3월경 사업확장을 위해 법인으로 전환

○ 법인설립시 사주 A의 주식보유비율은 60%이며 동일한 업종을 운영하던 중 대학을 졸업한 자녀 B에게 가업승계를 고려 중

○ '22.9월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신청 후 진단요청

□ 컨설팅 내용

○ (사전요건 진단) 증여자 60세 이상 요건(충족), 주식보유비율 50%이상(충족), 가업영위 기간(미충족*), 수증자 18세 이상 요건(충족)

* 개인 6년, 법인 2년간 사업영위로 10년 요건 미충족

○ (추가의견 제시)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등 가업의 영속성이 유지되는 경우 개인사업자로서 가업을 영위한 기간 포함되므로, 업종변경 없이 2년 후 주식증여시 특례적용 가능

사전 요건	다른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가업에 종사하는 경우 * 실제 가업에 종사한 경우 겸업의 경우에도 가업승계 가능

□ 사실관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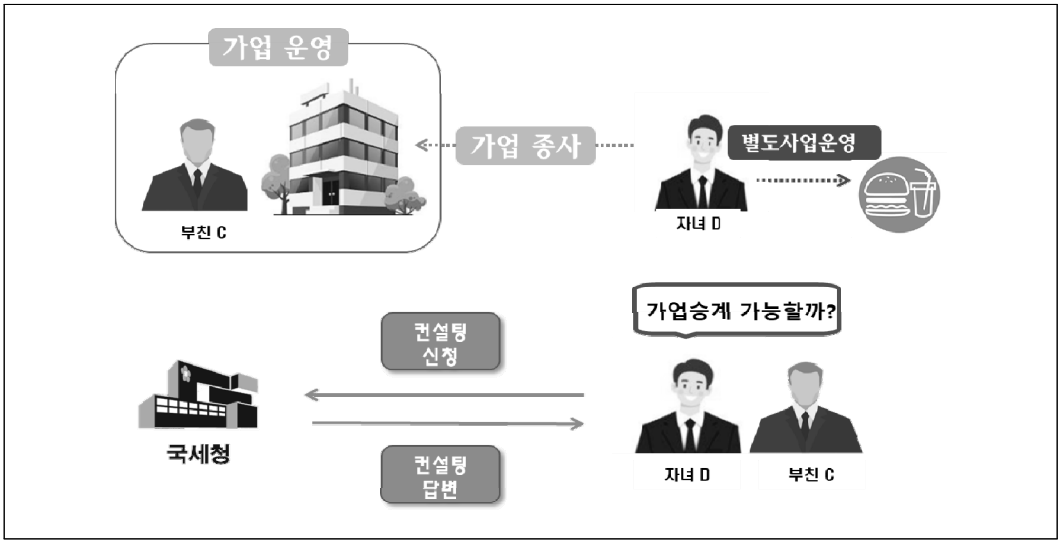

□ 컨설팅 신청

○ ㈜△△식품 대표이사 C는 10년 이상 식품 도소매업을 영위

○ 대표이사 C의 주식보유비율은 70%이며, 자녀 D는 5년 전부터 ㈜△△에 근무하고 있던 중 부업으로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여 프랜차이즈 빵집 운영희망

○ '22. 9월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신청 후 진단요청

□ 컨설팅 내용

○ (사전요건 진단) 대표이사 재직 요건(충족), 주식보유비율 50%이상(충족), 가업영위 기간(충족), 상속인 2년 이상 가업 종사(충족)

○ (추가의견 제시) 실제 父 회사에 종사한 경우, 다른 업종을 겸업하더라도 가업상속 공제 가능하므로 빵집 운영 가능함을 설명

사후 요건	가업상속 후 고용유지 요건 * 2020년부터 총급여액과 고용인원 기준 중 선택 가능

□ 사실관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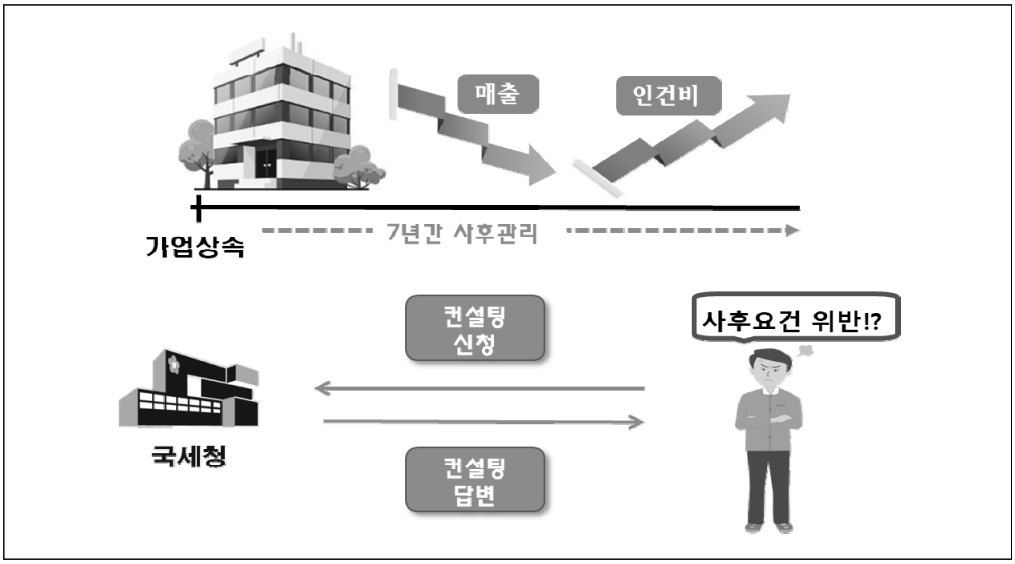

□ 컨설팅 신청

○ E는 父가 운영하던 ㈜◆◆호텔을 '20년 5월 5일 상속받고 상속세 신고시 가업상속공제 후 상속세 신고납부함

○ E는 '20년 6월 대표이사 취임 후 ㈜◆◆호텔을 영위하던 중 코로나 영향으로 급격한 매출 감소와 인건비 상승 등으로 경영애로 사항 발생

○ 기업회생을 위해 직원감축이 필요한 상황에서 컨설팅 신청

□ 컨설팅 내용

○ (사후요건 진단) 사후관리 기간(~ '27. 5. 4.), 가업용 자산 유지(충족), 상속인 가업 종사 및 지분유지(충족), 고용유지(충족)

○ (추가의견 제시) 매년 기준총급여액(고용인원)의 80% 이상 유지하고, 사후관리 종료하는 '27년까지 연간 평균 기준 총급여액(고용인원)의 100% 유지하는 경우 추징사유 아님을 설명

* '20년 이후에는 고용인원과 총급여액 기준 중에 선택적으로 적용 가능하므로, 인원 감축 결과 상속시점의 총급여액(고용인원) 수준을 유지하는 경우 사후관리 의무 위반 아님

붙임 2 - 가업승계 법령해석 변경 사례

사전 요건	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경우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

□ 사실관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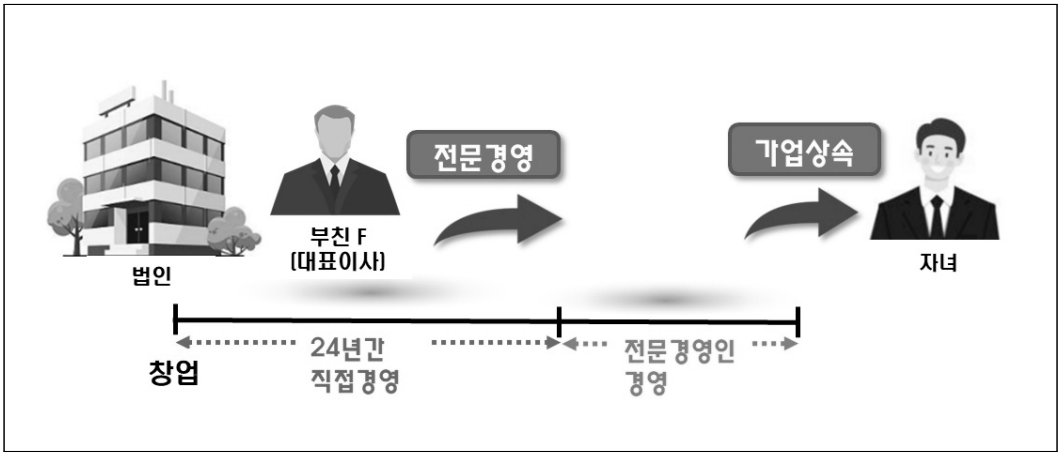

○ 법인(중소기업)의 최대주주 F(74세)는 24년간 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, 전문경영인에게 일시적으로 경영을 맡기고 일선에서 물러난 상태임

○ F가 경영에서 물러난 이후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종전해석으로는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지 못함

*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-741, 2014. 11. 14., 상속증여세과-622, 2021. 9. 30.

□ 적극해석

○ 가업의 기술 · 경영노하우 전수를 지원하려는 취지는 피상속인 · 상속인 요건 및 사후관리를 통해서도 가능한 것이므로,

– 피상속인이 “상속개시일 현재”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을 변경함

*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-571, 2022. 5. 30.

사전 요건	가업을 경영하던 부친이 배우자로부터 주식을 증여받아10년 미만 보유한 주식도 가업공제대상에 해당하는지

□ 사실관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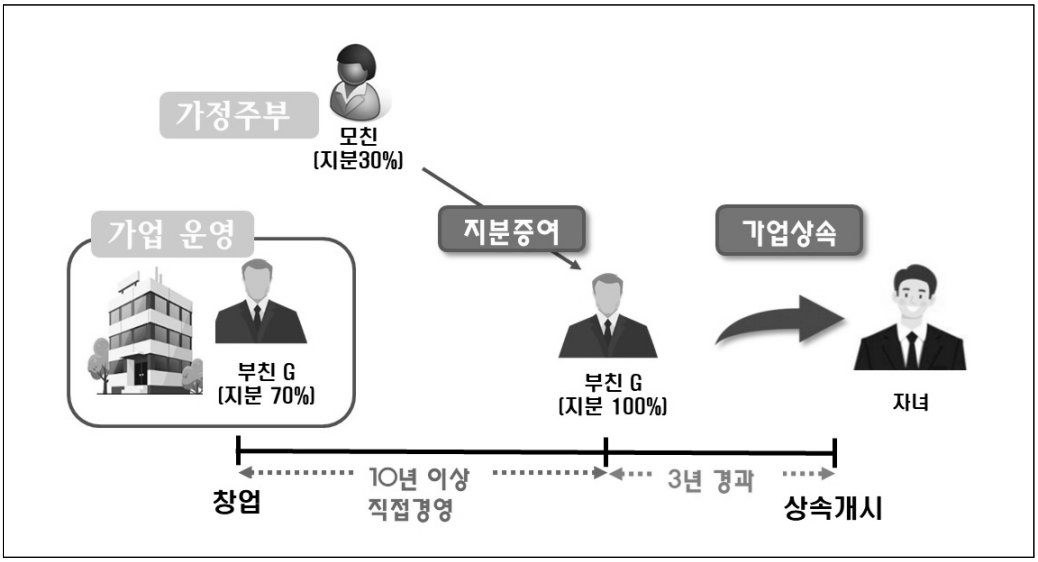

○ 가업을 경영하는 최대주주 G(60세)가 가업을 경영하지 아니한 배우자로부터 증여 받은 지 10년이 경과되지 않은 주식을 10년 이상 보유하던 주식과 함께 자녀에게 상속하는 경우,

○ G가 가진 주식 중 10년 미만 보유 주식은 종전 해석상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지 못함

*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-385, 2014. 5. 14., 상속증여세과-153, 2014. 5. 22.

□ 적극해석

○ 피상속인이 최대주주로서 본인과 특수관계인의 주식을 합하여 발행주식 총수 50%이상을 10년 이상 계속 보유한다면,

– 상속개시일 현재 10년 미만 보유한 주식도 상속공제대상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을 변경함

*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-10, 2022. 1. 5.

사후 요건	가업승계주식을 증여받은 후 일부 공장을 매각하고 증설하는 경우 사후관리요건 위반으로 추징되는지 여부

□ 사실관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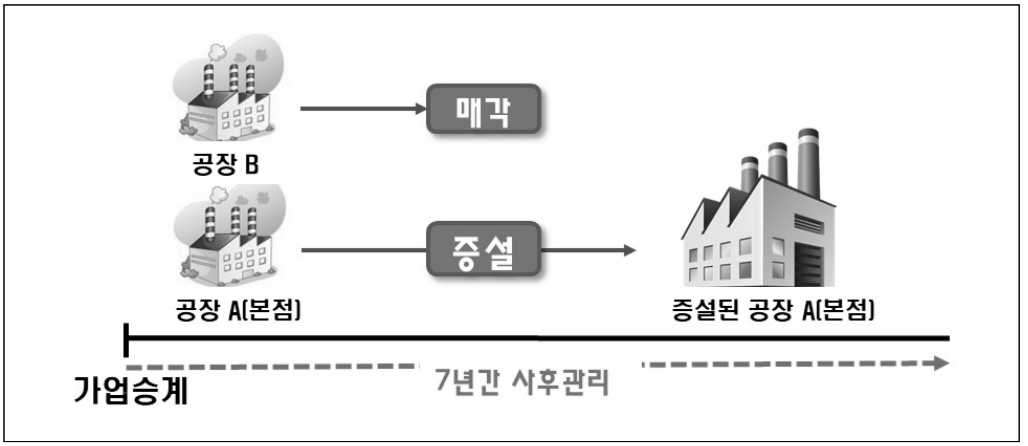

○ 법인(중소기업)의 최대주주 H(74세)는 '99년부터 법인을 설립하여 현재까지 경영을 영위하다 자녀 1인에게 주식 전부를 증여하여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음

○ 법인은 2개의 사업장(공장)을 보유 하고 있는데 이 중 공장 1개를 매각하고 본점 공장을 증설하고자 하나, 종전 해석상 추징대상으로 보아 매각하지 못함

* 상증세과-571, 2021. 8. 31.

□ 적극해석

○ 가업을 생전에 원활히 승계하도록 지원하려는 취지는 증여자 · 수증자 요건 및 현 사후관리 규정을 통해서 달성 가능하므로

– 자산 매각 후 증설은 추징대상이 아닌 것으로 해석변경 검토 중